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용어 정의 삭제 및 자전거등의 통행방법 특례 개정〉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3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인형 이동장치’ 용어 정의 삭제(안 제2조제19호의2)	2
2. ‘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용어 정의 삭제 및 자전거등 통행방법 특례의 개정(안 제2조제21호, 제13조의2)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0. 31.
3. 회부연월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인형 이동장치’ 용어 정의 삭제

개정안은 현행법의 용어 정의 중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u>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20. ~ 34. (생략)	제2조(정의) ----- -----. 1. ~ 19. (현행과 같음) <u><삭제></u> 20. ~ 21.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부상자수가 증가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2,200~2,30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20여명의 사망자, 2,400~2,6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고건수		897	1,735	2,386	2,389	2,232
	차대사람	304	663	1,042	1,099	1,014
	차대차	487	904	1,082	1,021	987
	차량단독	106	168	262	269	231
사망자수		10	19	26	24	23
부상자수		985	1,901	2,684	2,622	2,486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가해운전자 차종별·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그리고 해외 사례 중 법률에서 전동킥보드를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례로는 영국이 있으며,¹⁾ 영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실증실험에 따른 운행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²⁾ 개인 사유지에서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행될 수 있음.³⁾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이고, 공유

1) 전동킥보드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에는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이 있음.
2)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차량형식 승인을 받지 못하여 도로에서는 운행되지 못함.
3) 출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03,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제고방안” 36면~39면

킵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과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도로 운행이 가능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운행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4) 참고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는 2025년 12월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률안은 2026년 1월 8일 반려되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음.

2. ‘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용어 정의 삭제 및 자전거등 통행방법 특례 개정(안 제2조제21호, 제13조의2)

개정안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칭하는 자전거등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대상 중 개인형이동장치를 삭제하고, 자전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2 삭제, 제13조의2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략) <u>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u> 21의3. ~ 34. (생략)	제2조(정의) ----- -----. 1. ~ 21. (생략) <u><삭제></u> 21의3. ~ 34.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u>자전거등</u> 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u>자전거등</u> 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u>자전거등</u> 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u>자전거</u> 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u>자전거</u> ----- ----- ----- ----- ----- -----. ② <u>자전거</u> ----- ----- ----- -----.

현행	개정안
③ <u>자전거등의</u>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u>자전거등의</u>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u>자전거등의</u>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u>자전거등의</u>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u>자전거등의</u>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안전표지로 <u>자전거등의</u>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생략) ⑤ <u>자전거등의</u>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u>자전거등의</u>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③ <u>자전거</u>----- -----<u>자전거</u>----- ----- -----. <u>자전거</u>----- ----- -----. ④ <u>자전거</u>----- ----- ----- ----- -----<u>자전거</u>----- ----- ----- ----- -----. 1. (현행과 같음) 2. -----<u>자전거</u>----- ----- 3. (현행과 같음) ⑤ <u>자전거</u>----- ----- ----- -----. ⑥ <u>자전거의</u>----- -----

현행	개정안
에는 <u>자전거등에서</u> 내려서 <u>자전거등을</u>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u>자전거에서</u> ----- <u>자전거를</u> ----- -----.

개정안 제2조제21호의2와 제13조의2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관련 조항에 해당하여 삭제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칭하는 용어 정의인 자동차등을 삭제하는 것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차이가 있고, 실험 결과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인 25km/h에서 충격가속도(단위 질량 당 충격력)가 일반 자전거의 경우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⁵⁾ 자전거의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⁶⁾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이동수단의 성격에

5)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03,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제고 방안” 43면~50면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의 자동차등 용어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처음 도입된 법률제17371호에서 함께 규정되었는데, 당시 법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았음.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정되었음.

부합하는 규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다만, 자전거등의 용어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외에도 제13조(차마의 통행)제6항,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제2항·제3항,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제2항,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제2항,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1항·제3항, 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1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제1항제2호,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제2항,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4항·제7항·제8항·제9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도 함께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345

7) 참고로, 도로를 통행하는 주체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국제보건기구(WHO)의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2023” 보고서에서는 4륜차(4 wheelers), 2륜·3륜원동기자전거(Powered 2/3 wheeler, 자전거(Bicyclist), 보행자(Pedestrians), 기타(others)로 구분하고 있음.